
입 법 정 보

2018-18호



목 차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통상부).....	4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5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5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7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8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8
7.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9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9
9.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11
1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해양수산부).....	12
1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4
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6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6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7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8
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19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9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0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환경부).....	20
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21
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22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23
2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4
26.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5
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25
2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27
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28
3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8
3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29

32. 금융중심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29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3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31
3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31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32
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3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2
4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33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34

정부입법 예고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자원통상부)

- 예고일자 : 2018. 10. 15.
- 마감일자 : 2018. 11. 26.

-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18.6.21)”의 지역보완대책 이행을 위해 원전주변지역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지원금의 회수절차 마련과 재이월 금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의 예산지원 근거 신설 및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비중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원전주변지역에 한해 기본지원금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단가를 인상(안 별표2)

- 1) 에너지전환에 따라 원전주변지역의 장래 원전발전량 감소로 인한 지역의 지원금 감소 우려를 경감하고, 지역의 에너지전환 추진을 위하여 기본지원금 인상(0.1원 → 0.3원/kWh)

나. 지원금의 회수절차 근거 마련(안 제32조의4)

- 1) 법에서 위임한 지원금 회수와 관련 시행령상 세부절차 규정을 신설하여 입법 미비를 보완

다. 지원금의 재이월 금지원칙 명시(안 제33조의2)

- 1) 지원금의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장기이월금 축소를 위하여 지원금의 재이월을 원칙적으로 금지

라.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 예산지원 근거 신설(안 제27조)

- 1) 원전 및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감시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 및 발전사업자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

마. 기본지원금의 원전주변지역 사용 비중 확대(안 제19조)

- 1) 원전주변지역의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지원금이 주변외지역에 분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변외지역의 지원비중 상한을 축소 (100분의 50의 범위 → 100분의 30의 범위)

바. 지원사업의 평가 감액기준 조정(안 제32조의3)

- 1) 법(제16조의5 제3항)에서 평가 감액기준을 10% 이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규정은 10%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률보다 시행령이 과도하게 규정되고 있는 문제 해소

사. 홍보사업의 범위 규정 보완(안 제24조)

- 1) 홍보사업의 범위를 전력사업 전반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제10조제1항제3호) 취지에 부합되도록 시행령 규정 보완

아.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연임을 3회로 제한(안 제3조)

- 1) 민간위원의 무제한적인 연임을 방지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연임을 3회로 제한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8. 10. 15.
- 마감일자 : 2018. 11. 5.

-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최저 생계 수준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한도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경제상황이 변화함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생계비와 급여, 예금액의 압류금지 최저한도를 18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조, 제3조, 제7조)

3.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0. 15.

● 마감일자 : 2018. 11. 26.

○ 주요내용

가.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안 제68조)

- ‘19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8,350원, 일 66,800원)에 따라, ’ 19년 부터 구직급여 하한액(60,120원)이 상한액(6만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어, 구직급여 상한액을 6만 6천원으로 인상하고자 그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액을 조정

* 개정안 시행 전에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정부안 (‘17.4.6 제출)의 의결로 구직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될 경우, 동 조항은 구직급여 1일 상한액 6만 6천원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음

나. 육아휴직급여 인상(안 제95조)

- 저소득·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지급수준을 통상임금의 40→50%로 인상하고, 상·하한액도 인상(상한 100→120만원, 하한 50→70만원)로 지원수준을 인상하고자 함

*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17.9월 시행)

다. 육아휴직특례 상한액 인상(안 제95조의2)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에게 급여를 더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의 특례 규정의 월 상한액을 현행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 개편(안 제29조)

- 통상 육아휴직 등 시작 1~2개월 전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기간을 2주에서 2개월로 확대하고, 인수인계기간에 한해 중소기업 지원단가를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하고자 함. 아울러,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을 단축을 허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유사사업 중복 지원문제가 계속되었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을 ‘정규직전환지원’ 사업으로 통합 개편하고자 함

- 마. 장애인 고용의무 미이행 사업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제한(안 제26조)
-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제한하고자 함

4.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0. 15.
- 마감일자 : 2018. 11. 26.

○ 주요내용

- 가. 전자문서 이용 업무처리 규정 신설 (안 제6조)
-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결과를 신청인(사업주 등)이 아닌 피보험자(근로자)에게 통지할 때 이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자 함.
- 나.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완화(안 제44조)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10% 이상에서 100% 이상 급여 지급 시로 완화하고자 함
- 다. 장년근로시간 단축지원 사유 확대(안 제49조)
- 장년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개인의 질병이나 부상이더라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요건인 임금의 감액으로 인정하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라.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 지원규정 정비(안 제51조)
-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 지원 규정을 폐지하는 시행령 개정예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
- 마. 직장어린이집 지원요건 확대(안 제59조)
-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교재·교구비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관리운영비(기본교육 보육활동비)’로 확대하고자 함
- 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의 인정기준 변경(안 제92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개정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경우 상시·지속성을 인정하여 “생업 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였기에 동 개정 규정

을 반영하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상 취업의 인정기준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6. ● 마감일자 : 2018. 11. 26.
-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가 등록등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국회 본회의 의결 2018.9.20.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변경 신청 미이행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제21조, 제31조)
 - 1)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등은 연구기간, 제조·수입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면제확인을 하지 않고, 변경신청만 하면 되도록 법률 개정
 - 2)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세분화하고, 변경신청 접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
 - 나.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 업무의 위탁(제31조)
 - 1) 사업자가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유해성평가 결과가 아니라 환경부가 해당 평가를 위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므로 유해성 시험자료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사용승인을 받도록 법률 개정
 - 2) 사용승인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한국환경공단으로 이관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6.

● 마감일자 : 2018. 11. 26.

○ 낙동강 원수(原水)에서 미량유해물질 중 하나인 과불화화합물이 일부 검출되어, 먹는 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낙동강수계 일반수도사업자의 고도정수처리비용의 수계관리기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낙동강 수돗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류경보 발생 시 조류제거를 위한 정수처리 비용 지원 및 과불화화합물 일정기준 이상 검출시 수도사업자 고도정수 처리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36조제4호 개정)

나. 과다한 개인정보 요구 등 관행적인 행정절차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토지매수 신청시 제출서류를 주민등록등본에서 초본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제1호 개정)

7.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8. 10. 16.

● 마감일자 : 2018. 11. 26.

○ 농림어업총조사를 위한 조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및 안전용품 지급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안 제 19조)

1) 조사요원 안전용품 지급 규정 신설

나. 농림어업총조사 시행시 안전사고 보상 근거 규정 신설(안 제20조)

1) 업무수행 중 발생한 조사요원의 안전사고 보상 근거 마련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6.

● 마감일자 : 2018. 11. 26.

○ 국가 시범도시 추진 근거 마련 및 국가 시범도시 내 자율차, 드론, 개인 정보 활용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도입, 혁신성장진흥구역 신설 등을 위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732호, 2018. 8. 14.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초경량비행장치,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대여업,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자를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추가(안 제17조 제4항제19호부터 제22호까지 신설)
- 나.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내용에 조성토지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19조제2항제5호 신설)
- 다.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27조의2 신설)
- 라. 국가시범도시 지정기준으로, 국가시범도시 성과의 주변도시에 대한 영향력·파급력, 혁신산업의 집중 가능성 등을 추가하고, 관보 고시 등 국가시범도시 지정절차 구체화(안 제34조 신설)
- 마. 국가시범도시 계획수립 및 조성 등의 시행을 지원할 민간전문가의 위촉·운영에 관하여 규정(안 제35조 신설)
- 바. 국토교통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국가시범도시 및 혁신성장진흥구역에 입주한 기업·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 마련(안 제36조 신설)
- 사.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자를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수집 활용주체로 규정(안 제37조)
- 아. 사업시행자가 국가시범도시의 조성토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공모 절차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공급방법 규정(안 제38조, 제39조 신설)
- 자. 법 제41조에 따라 공공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가 제한되는 기업의 범위와 참여를 허용하는 예외 사유 구체화(안 제40조 신설)

차. 혁신성장진흥구역 지정 기준 및 지정 변경 해제 절차, 국가스마트 도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사항과 사업시행자가 혁신성장진흥구역 내 창업지원시설 등을 건축 임대 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 작성 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안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 신설)

9.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7.
- 마감일자 : 2018. 11. 6.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등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수리 간주 규정의 도입

- 1)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함.
- 2)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이 법령에 명확하게 나타나는 한편, 처리기간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민원 처리기간의 준수율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3) 신고수리 간주 규정이 도입되는 조문 목록

나.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

- 1)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신고 등은 수리 간주 규정은 도입하지 아니하되, 해당 신고 규정이 행정청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2) 자의적 법령해석으로 인한 집행과정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는 조문 목록

10.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0. 17.

● 마감일자 : 2018. 11. 26.

○ 국제해사기구(IMO)는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저감 등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해상안전정보를 선박에 제공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의 도입을 결정하고 관련 국제표준 제정 등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국제해사기구(IMO)의 e-Navigation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양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한국형 e-Navigation 구축사업’을 추진 해 왔으며, 2020년 전국 규모의 시범운영에 이어 2021년부터는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계획임. 이에 따라 e-Navigation 서비스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근거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대국민 e-Navigation 서비스 시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함. 아울러 첨단 ICT 기술의 적용으로 해상교통관리체계를 과학화, 고도화, 지능화하여 해양사고의 저감 및 해상교통효율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련 기술개발 촉진 및 이용 활성화 등을 통해 해상교통관련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등의 정의 (안 제2조)

1) ‘해상교통정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해상무선통신망 등 기술 개발에 따라 새롭게 규정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2)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운영위원회를 두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운용에 관한 사항, 해상교통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지능형 해상교통관리체계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하도록 함.

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 1) 제8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수신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
- 2) 해양수산부장관은 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등을 연계하여 재난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3)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이용 활성화 및 관련기술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전전략 수립, 홍보 세미나 개최 및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4)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관련 정책 수립, 학술연구 진흥, 통계 작성 등에 활용하기 위해 해상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하고 활용할 수 있음.
- 5)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음.

라.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관리(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 1)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대역을 공동 사용하는

공공통신망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등(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등과 미리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무선통신설비의 접속 등을 통해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통신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바. 건물과 토지에의 출입 등(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보수,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한 조사·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건물 또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표지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 등을 설치·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3)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설비의 설치에 장애가 되거나 전파장애를 일으키는 인공구조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인공구조물 등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상무선통신망 등 보호조치, 손실보상 등(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 활용기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및 해상무선통신망의 사용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도록 함.
- 2) 해양수산부장관 및 활용기관의 장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
- 3) 누구든지 서비스설비 및 해상무선통신 설비를 파손, 훼손하는 등 해상무선통신망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됨.

11.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0. 17.

● 마감일자 : 2018. 10. 29.

○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전력자원의 종류와 규모,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 등록을 요하는 사항,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전기공급 거부사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규모 전력자원의 종류 및 규모(안 제1조의3 신설)

1)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대상인 소규모전력자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現 운영실태 및 향후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규정

나.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 및 변경등록 사항(안 제4조의2 신설)

1)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최소한의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

2) 전기신사업자가 상호, 주된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기술인력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도록 함

다. 전기사업자 및 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을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라.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는 전기공급의 의무를 부담하는 바, 공급 거부의 금지는 공익 보호를 위해 계약자유 원칙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전기신사업자도 공급을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제2호)

마.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중복되어 있는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4조)

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61조의4 신설)

사.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에 위탁(안 제62조 제6항 신설)

1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8. 10. 17.
- 마감일자 : 2018. 11. 26.
-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기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44호, 2018. 6. 12. 공포, 2018. 12. 13. 시행)됨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토록 하며, 전기신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전기신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운영계획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신설)
 - 나. 전기신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규정(안 제6조제2항 신설)
 - 다.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안 제10조의2 신설)
 - 라.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및 별표2를 삭제
 - 마. 전기신사업자 약관 신고 등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8. 10. 17. ● 마감일자 : 2018. 11. 26.
-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2018년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24” 에서 “646” 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은 현행 “183.3원” 에서 “189.7원” 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1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8. ● 마감일자 : 2018. 11. 27.
-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 업무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하고, 전기자동차 자금 보조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며, 수소연료전지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에 관한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환경위성 관측망 구축·운영에 대한 과학원 위임 근거 신설(안 제63조제3항)
 - 나.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를 위한 지원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안 제66조제1항제8호의2)
 - 다. 수소연료전기차의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자금 보조 지원 업무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제4항)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8. ● 마감일자 : 2018. 11. 27.
-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에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66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충전시설설치 업무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 주요내용

- 가.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 추가(안 제12조제1항)
- 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1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8.
- 마감일자 : 2018. 11. 27.

-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에 추가하고(안 제12조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66조제4항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충전시설설치 업무 위탁이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기관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 주요내용

- 가. 대기오염집중측정망 업무 위임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측정망 설치 계획에 대한 고시 주체 추가(안 제12조제1항)
- 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공건물, 공동주택, 공공주차장 등에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 제79조의8)

1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0. 18.
- 마감일자 : 2018. 11. 27.

-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남획 및 서식지훼손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빗자루해송 등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로이 지정하고, 분류학적으로 별개의 종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장수샛갯조개를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 중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18. 청소년활동 진흥법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8. 10. 18.

• 마감일자 : 2018. 11. 27.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규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일부 규제에 대한 규제 개선 및 일몰을 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 “제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의 허가서류 등”에 대한 일몰을 해제(안 제21조제2항 제3호 삭제)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비치 장부 중 ‘전화센터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제외(안 제2조의2 별표)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비치 장부 중 ‘비품수불대장’ 제외(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 “제1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의 치료보호비용의 지급절차 등”에 대한 일몰 해제(안 제18조제 9호 삭제)

1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8.

• 마감일자 : 2018. 11. 27.

- 임대주택 단지내 유희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하여 주차수입을 관리비 경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임대주택 주차장의 외부개방 허용(안 제42조제2항제3호 및 제3항 신설)

- 1) 임대사업자는 주차장 개방 및 세부 운영기준을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정한 후, 과반수임차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최종결정
- 2) 무분별한 개방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자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20.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8. 10. 18. • 마감일자 : 2018. 11. 27.
- 고등교육재정 5개년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주기를 단축하여 정기국회 개최 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1항 신설)
 - 나. 기본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2항 신설)
 - 다. 지원계획 수립 시 의견 청취 및 협의 규정(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 라. 지원계획 확정 및 국회 제출 규정(안 제4조의2 제4항 신설)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19. • 마감일자 : 2018. 11. 28.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법 적용 대상 업종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인 석유 정제품 제조업, 무기화학 제조업, 정밀화학 제조업,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업의 사업장이 통합환경관리를 위해 준수하여야 배출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관리 및 조치기준, 오염물질 등의 측정·조사 기준 및 최대배출기준에 대하여 석유 정제품 제조업, 무기화학 제조업, 정밀화학 제조업,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업에 속하는 통합관리 사업장이 배출시설 등을 설치·운영하

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규정

22.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6. 29.

• 마감일자 : 2018. 8. 8.

-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교육, 자격 및 관리를 강화하고, 선박 연료유 건본 보관기간 현실화 등 해양수산부 민관합동 규제개선회의를 통해 발굴한 불필요한 해양환경 규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는 해양오염방지협약의 개정사항에 대응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 강화 등(안 제32조, 제36조, 제70조, 제121조)

- 1)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관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선박과 해양시설 소유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격보유자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기술요원으로 고용하게 하는 한편, 해양시설 소유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해양시설 소유자가 전문업체에 오염물질 이·배송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업체도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신고수리제도 합리화(안 제33조, 제76조, 제111조)

- 1)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해양시설 신고, 폐기물위탁자 신고 및 선박해체 신고 시 신고자가 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청에서 반드시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

다.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처리 절차 개선(안 제37조)

- 1) 수리·해체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유창청소업자,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자뿐만 아니라 폐기물관리법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관리 강화 등(안 제41조의3, 제41조의4, 제112조)

- 1)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5,000톤 이상의 선박의 소유자로 하여금 각 국가에서 검증한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선박의 연료유 사용량을 각 국가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임에 따라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검인제도를 신설하고, 선박소유자에게 선박연료유사용량 보고의무를 부과

마.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개선(안 제44조, 제44조의2)

- 1) 국제해사기구에서 2020년부터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할 예정임에 따라 LNG 등 대체연료와 배기가스정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의 선박적재를 금지

바.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 단축(안 제45조)

- 1) 선박소유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국내항해에만 종사하는 선박 등 연료유 교체주기가 짧은 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견본 보관기간을 1년에서 6개월미만으로 단축

사. 해양오염방제업자의 의무 강화(안 제72조)

- 1)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방제를 위해 해양오염방제업자에게 방제조치에 협조할 의무 등을 부과

아. 폐기물위탁자의 지위승계(안 제76조)

- 1) 폐기물위탁자 지위승계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폐기물위탁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 그 사업의 양수인·상속인 및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지위승계규정 마련

2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10. 19.
- 마감일자 : 2018. 11. 29.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제도와 양성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국가숲길제도 및 숲길 조정 전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안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4제2항 ~ 제5항)
- 1)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발급시 수수료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운영에 대한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 산림청장의 지도감독 관련 규정을 보완하며,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취소 사유에 자료요구·현장점검·시정요구 등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함
- 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안 제11조의6 ~ 제11조의7)
- 1)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업무를 규정하며 산림레포츠지도사자격증 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와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며 산림레포츠시설에 산림레포츠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안 제16조의3)
- 1) 자연휴양림 등급결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의한 현장조사,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라. 국가숲길제도, 사전 타당성평가제도, 예약탐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 1)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관리하고 숲길의 조성 전에는 타당성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과정에는 예약탐방제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고자 함

24.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일자 : 2018. 10. 19.

• 마감일자 : 2018. 11. 30.

- 농촌관광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하되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평가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경영체의 부담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충실한 준비를 통해 실질적 품질향상을 도모

○ 주요내용

가. 농어촌관광 사업별 등급결정 대상부문 제한 삭제 및 평가내용 규정 (안 제7조의2)

- 1) 농어촌관광 경영체의 서비스 상태, 시설상태, 안전·위생관리 상태 등을 평가하되(안 제7조의2제2항), 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부문과 부문별 등급결정기준의 세부항목별 점수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등급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제7조의2제3항)

나. 등급결정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안 제7조의3)

- 1) 농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을 2년마다 실시함에 따라 평가준비에 시간과 비용 소모가 크고 등급개선 노력이 반영될 시간이 부족하여, 등급결정을 3년마다 실시하여 경영체들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충실한 준비를 통해 농촌관광 품질을 개선하도록 함.

25.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9.

• 마감일자 : 2018. 11. 28.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신차로 교환 시 이미 납부한 도시철도채권의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을 위반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과징금도 가중하도록 하여 사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행정처분의 종류를 명확히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 면제 규정 신설 및 일몰 기한 연장(안 별표2)

- 1) 자동차관리법에서의 중재판정에 따라 하자차량을 신차로 교환 시 도시철도채권을 다시 매입하지 않도록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나. 사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별표3)

- 1) 사업정지기간의 가중을 과징금 산정 시에도 반영하고자 함.
- 2) 경고 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한 대상에서 적용을 제외하고자 함

26.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19.
- 마감일자 : 2018. 11. 28.

- 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 18.12.31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1년 연장하고, 화물차 심야할인 조건 완화 및 할인율 소폭 확대를 통해 화물차 심야할인 혜택을 확대하여 고속도로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화물차 심야할인의 유효기간을 '18.12.31에서 ' 19.12.31로 1년 연장(안 제8조제1항제7호)
- 나.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조건을 완화하고 할인율을 소폭 확대 (안 제8조제1항제7호, 제8조제2항 제2호 마목,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제2항제4호)

2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 예고일자 : 2018. 10. 19
- 마감일자 : 2018. 11. 29.

-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정해진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징계·문책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문책권자에게도 조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를 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세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요구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 1) 감사기구의 장 임용 자격요건을 결여한 자에 대한 처리규정 부재.
- 2) 감사원은 감사기구의 장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3)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해 교체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체감사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21조의2 신설)

- 1) 각급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
- 2) 자체감사 결과 및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3) 자체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인의 감사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대상자 확대(안 제24조 제1항 개정)

- 1) 기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도록 하여 징계·문책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법 적용상 문제점 발생.
-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문책권이 없고 징계·문책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징계·문책권자에게도 하도록 함.
- 3)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효력인 징계절차의 정지 효력 및 징계시효의 정지 효력이 논란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와 세부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1조 개정)

- 1) 기존에 자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

- 2)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3) 향후 자체감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28.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

- 예고일자 : 2018. 10. 19.
- 마감일자 : 2018. 11. 29.

- 자체감사기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상 정해진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요구의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체감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여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과 징계·문책권자가 다를 경우 징계·문책권자에게도 조사 개시 및 종료의 통보를 하도록 하고,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 of 세부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한 교체요구 근거 마련(안 제11조 제3항 신설)

- 1) 감사기구의 장 임용 자격요건을 결여한 자에 대한 처리규정 부재.
- 2) 감사원은 감사기구의 장이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감사기구의 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3) 자격요건을 결여한 감사기구의 장에 대해 교체요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체감사기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체감사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안 제21조의2 신설)

- 1) 각급 자체감사기구의 자체감사 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권 보장이 미흡한 상황.
- 2) 자체감사 결과 및 재심의신청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상대방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함.
- 3) 자체감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이해관계인의 감사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대상자 확대(안 제24조 제1항 개정)

- 1) 기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만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하도록 하여 징계·문책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법 적용상 문제점 발생.
- 2)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징계·문책권이 없고 징계·문책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징계·문책권자에게도 하도록 함.
- 3) 조사 개시 및 종료 통보의 효력인 징계절차의 정지 효력 및 징계시효의 정지 효력이 논란 없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됨.

라. 과태료 부과 기준의 세부기준 설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41조 개정)

- 1) 기존에 자체감사에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감사를 거부,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음.
- 2) 이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3) 향후 자체감사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됨.

2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일자 : 2018. 10. 22.
- 마감일자 : 2018. 12. 3.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가액평가조서의 작성 대상을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여 진입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사무 중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 완화(안 제12조)

- 1)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 제고」 권고안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가액평가조서의 작성대상을 감정평가법인으로 국한한 것을 감정평가업자로 완화하도록 함

30.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2. • 마감일자 : 2018. 11. 12.
- 현행 법령상 규정된 관광사업의 종류 외에 관광 환경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신유형의 관광사업체를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분류를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관광 편의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안 제2조제1항제6호 ‘타’ 목 신설)

31.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8. 10. 22. • 마감일자 : 2018. 12. 3.
-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업종의 지정기준과 지정신청이 가능한 업종, 지정 신청 절차 등을 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관광 편의시설업 중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요건을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2 개정)
 - 나.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가능업종을 ‘관광산업 특수분류’ 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규정(안 제14조 관련 별표 2의2 신설)
 - 다. ‘관광지원서비스업’ 의 지정권자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지정 시 구비서류 신설(안 제15조)
 - 라. 구비서류 등 신설에 따라 지정신청서 서식 변경(별지 제21호서식 개정)

32.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 예고일자 : 2018. 10. 23. • 마감일자 : 2018. 12. 3.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근거 신설(안 제11조제3항)
- 1)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함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4.
 - 마감일자 : 2018. 12. 3.
- 기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 도로명주소가 해당 시군구 고시에 의해 신설되거나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시군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해당 시군구 물건주소 직권변경 근거 신설(안 제4조제8항 신설)
- 1) 시군구가 등록임대주택 물건소재지의도로명 주소를 신규부여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라 시군구가 등록임대주택의 주소를 직권변경하도록 함.

3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4.
 - 마감일자 : 2018. 12. 3.
- 등록 전 입주한 세입자에 eog나 임대사업자 등록증 고지의무를 신설하고, 임대사업자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양수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등록 전 입주한 임차인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고지(안 제2조제6항)
- 1) 임대사업자 등록 전에 이미 입주 중인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전까지 임대인의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알기 어려운 바, 임대사업자 등록 후 즉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등록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사업자 간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변경신고 간주(안 제15조제4항)

- 1) 양도자가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더라도, 양수한 사업자는 별도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하는 바, 양도신고가 수리되면 양수인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

3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 예고일자 : 2018. 10. 25. ● 마감일자 : 2018. 11. 7.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제때 마련 등을 위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제심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과태료 부가기준 정비(안 별표2)
 - 1) 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차 위반시 600만원, 2차 위반시 800만원, 3차 위반시 1,000만원으로 정함(별표2제2호다의2목)
 - 2) 화학물질안전원장 위임사항 중 이법시예고 시 누락되었던 정보 공개 심의결과에 관한 ‘소명 신청의 접수 검토 관리’ 추가(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3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

- 예고일자 : 2018. 10. 25. ● 마감일자 : 2018. 12. 4.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는 매년 보건소 및 병·의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체 등에 근무하는 식품위생분야 종사자가 보건소 및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업무공백 발생 등으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보건소 및 의료기관이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업소를 방문하여 건강진단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제3조제2항)

1) 보건소 및 의료기관은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소를 방문하여 출장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7.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8. 10. 25.

● 마감일자 : 2018. 12. 4.

○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증제도와 양성기관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의 활성화 및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자연휴양림의 지속적인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고, 국가숲길제도 및 숲길 조정 전 타당성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양성기관 관련 제도의 보완(안 제11조의2제5항, 제11조의4제2항~제5항)

나.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산림레포츠분야 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안 제11조의6 ~ 제11조의7)

다. 자연휴양림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자연휴양림의 경쟁력 제고를 유도(안 제16조의3)

라. 국가숲길제도, 사전 타당성평가제도, 예약탐방제도 등을 도입하여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5조의2)

3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5.

● 마감일자 : 2018. 12. 4.

○ 법에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인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8. 10. 25. ● 마감일자 : 2018. 11. 14.
-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하여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차이의 정도에 따라 거주 의무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공공분양주택의 입주 의무 적용주택을 개발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분양주택을 포함하려는 것임.

40.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8. 10. 25. ● 마감일자 : 2018. 12. 4.
- 최저임금 산입 또는 미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최저임금 영향이 큰 소상공인의 의견이 최저임금 결정 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가.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1항 신설)
 - 나.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의 범위 규정(안 제2조제2항 신설)
 - 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추천단체가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4조 개정)
 - 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을 추천하는 단체로 지정(안 제5조 개정)
 - 마.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을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고위공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변경(안 제6조 개정)
 - 바.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서에 작성 방법 및 유의

사항을 추가하는 등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서식 변경)

4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8. 10. 26.
- 마감일자 : 2018. 12. 7.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을 수립하고, 해외에서 신종 수산생물전염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및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근거 구체화 등 그간 법령 운영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함.